

## 경운대학교 국내·외 현장실습수업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칙 제 20조 제 ①항의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기관에서 소정의 현장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현장실습기관”이란 학생들이 현장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내·외 기관을 말한다.
3. “현장실습생”이란 학점 인정 및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경운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교과목의 이수)** ① 현장실습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와 현장실습 업체간에 체결한 현장실습 협약서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수업 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
2. 징병검사, 장·소집에 응한 경우(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경우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1 (출결관리)** ①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이 해당 학생에 대한 출결사항을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안내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결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이수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 또는 결석 등의 출결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1. 법정공휴일
2. 참정권 행사일
3. 실습기관의 휴무일
4. 실습기관과 학생의 사전 협의에 의해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해당일 등
5.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제4조(교육과정 편성 및 취득학점)** ① 현장실습수업 과정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학기제(정규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며, 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② 국내·외 현장실습수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시까지 최대 4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성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교과목명(개설학점)	실습기간	신청학점	
국내·외	도제제	현장체험3-1,3-2(1)	1주(40시간) 이상 1학점	
	계절제	현장실습3-1,3-2(1)	1주(40시간) 이상 1학점	
		현장실습4-1,4-2(2)	2주(80시간) 이상 2학점	
		현장실습5-1,5-2(3) 현장실습LINC1~4(3) R&D인턴십1~4(현장실습)(3)	4주(160시간) 이상 3학점	
		현장실습6-1,6-2(5)	6주(240시간) 이상 5학점	
		창의적설계FT1	8주(320시간) 3학점	
		학기제	현장실습7-1,7-2(1) R&D인턴십5-1,5-2(1) 글로벌현장실습7-1,7-2(1) 창업현장실습7-1,7-2(1)	15주(600시간) 이상
	현장실습8-1,8-2(2) R&D인턴십6-1,6-2(2) 글로벌현장실습8-1,8-2(2) 창업현장실습8-1,8-2(2)			
	현장실습9-1,9-2(3) R&D인턴십7-1,7-2(3) 글로벌현장실습9-1,9-2(3) 창업현장실습9-1,9-2(3)			
	현장실습10-1,10-2(6) R&D인턴십8-1,8-2(6) 글로벌현장실습10-1,10-2(6) 창업현장실습10-1,10-2(6)			
	현장실습11-1,11-2(9) R&D인턴십9-1,9-2(9) 글로벌현장실습11-1,11-2(9) 창업현장실습11-1,11-2(9)			
	창의적설계FT2		15주(600시간) 6학점	

③ 창의적설계기반 현장실습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9학점이다.

④ 총 수강신청 학점이 16학점 이상일 경우 9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15학점을 이하일 경우 6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전공인정학점이 맞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학점별 전공인정 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⑤ 교과목명은 ②항을 우선 적용하며 기타 특별히 인정하여야 할 경우 현장실습 대체교과목 인정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거쳐 대체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학생지도 및 학점인정)** ① 지도교수는 현장실습수업에 참가한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참여학생의 현장실습일지를 수업 종료 후 1주 이내에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성적은 산업체와 현장지도담당자가 평가한 성적과 대학에서 부과한 과제 성적,

현장파견 지도교수의 평가, 그리고 현장 실습일지의 기록내용 등을 근거로 평가하며, 현장 실습 평가의 비율은 다음 기준에 의거한다.

1. 산업체 현장지도자의 평가 ..... 50%
  2. 기타(현장지도, 실습일지 등) ..... 50%
- ④ 현장실습수업 결과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학점을 인정 Satisfactory(S)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미인정 Unsatisfactory(U) 처리한다.

**제6조(현장실습 업체 선정 및 협약)** ① 각 학부(과)장은 현장실습 관련 사항을 공지하거나, 산업체의 장에게 서식에 의거 학생 현장실습을 의뢰한다.

- ② 국내 현장실습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학부(과)장이 승인한 업체로 선정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2.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4.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수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5. 국외의 경우 전항의 사항에 준하여 선정한다.

- ③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근무)계획
  2. 현장실습기간중 학생의 보건·위생·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현장실습생에 대한 수혜 조건(후생복지 및 실습비 등)
  4.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④ 삭제

**제6조의2(현장실습업체의 변경)** ① 현장실습 중인가가 업체 또는 개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업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업체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제7조(신청자격)** ① 현장실습 신청 자격은 재학중인 자로서 최소 4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생(편입생은 최소 1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생)으로 하며, 학기제 현장실습은 연속 2회 신청할 수 없다.(단, 계절제 및 학생창업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이수학점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창의적설계기반 현장실습 신청자격은 3학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8조(현장실습수업 신청)** ①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절차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현장실습 운영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기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제 현장실습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신청 및 운영)** ①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

청하여 선발된 학생이 학기별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수강신청이 확정되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수강신청을 취소한다.

② 국내·외 현장실습 중에는 다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단, 원격교육(가상강좌) 교과목은 이수 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수업 중 사고, 질병, 군입대 등을 사유로 현장실습수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장실습수업 포기 신청서를 교무처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업체에도 포기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기제 현장실습수업을 포기한 자로서 휴학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학칙 제 34 조에 의거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잔여기간이 없는 자는 휴학할 수 없다. 휴학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학기 현장실습수업의 성적은 실격 처리되며,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학기제 현장실습수업을 포기한 자가 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납입금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기 개시일과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납입금징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의무위반자 조치)** 현장실습수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체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된 자
2. 고의적으로 실습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4. 종합보고서(출근부, 실습일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1조(현장실습 지도)** 현장실습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실습교육의 개선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교원의 현장 파견 지도를 실시 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